작업중지 요청제 추진 안내(No Safety, No Work Campaign)

□ 관련 및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및 동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1조(작업중지)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서 제23장(작업중지 요청제에 관한 지침)

○ 위 관련에 의거하여 우리연구원 내 작업장소(실험실, 도급작업 등)에서 작업자가 유해·위험 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작업중지를 요청하고 후속조치를 통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고자 함

□ 내용

○ (개요) 모든 작업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작업중지 요청의 주체 및 분류는 다음과 같음

○ 주체 : 작업을 하는 당사자 또는 위험상황의 목격자

* 사업주(원장, 시공사 대표)가 이를 발견한 경우에도 즉각 작업을 중지

○ 작업중지 요청의 분류 및 수신자

- 작업중지 요청은 원칙적으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기관의 관리 실정을 고려하여 '매우 급박한 위험'과 '급박한 위험'으로 이를 구분하고, 안전관리담당부서의 조력하에 해당 제도를 추진

구분	내용	대상	비고
매우 급박한 위험	매우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보호조치 없이 고소작업 실시, 가연물이 방치된 상태에서 화기작업 등)	관리감독자 안전보안실	
급박한 위험	사고가 예견되는 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장 출입, 방호조치가 되지 않은 기계 사용 등)	관리감독자 연구책임자 현장소장	

- 구분에 관계없이 작업중지 요청을 받은 관리감독자, 연구책임자 또는 현장소장은 그 내용을 '한국재료연구원 Safety 신고채널'에 통보

○ 작업중지 요청의 과정

- '매우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는 관리감독자 또는 Safety 신고채널을 통하여 안전시설실로 즉각 작업중지 요청을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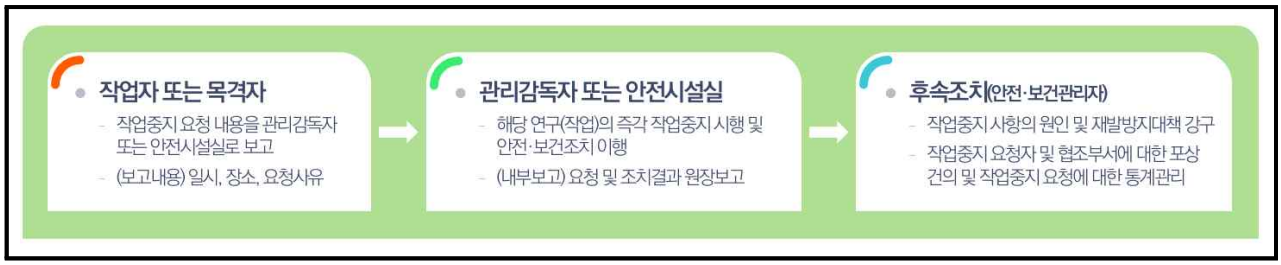

* 원장, 협력업체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시설실 등 안전관리 조직에서는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음

- 연구원의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는 관리감독자(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이를 신고하며, 신고를 받은 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안전시설실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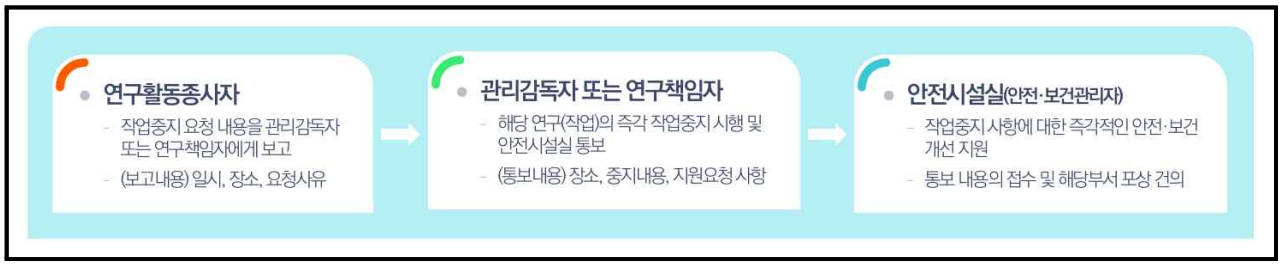

- 협력업체의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는 현장소장 및 해당 사업주에게 이를 신고하며, 신고를 받은 자는 즉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시행하고 해당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에게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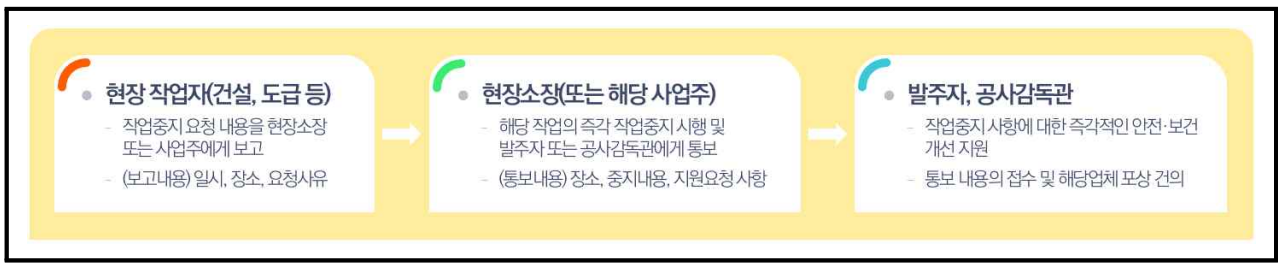

□ 작업중지 요청 방법

1. 관리감독자, 연구책임자, 현장소장에게 신고(작업중지 요청)하는 경우
 - 대면보고 및 전화, 문자 등 통신수단에 관계없이 일시/장소/요청사유 등에 대하여 보고
 - 보고를 받은 자는 'Safety 신고채널'을 통하여 조치를 지원 요청하는 사항(필요시)과 중지내용을 통보(필수)하여야 함

2. 안전시설실로 신고(작업중지 요청)하는 경우
 - 한국재료연구원 'Safety 신고채널'의 상담원 채팅을 통한 내용입력
  * 소속/성명/휴대전화/신고내용/장소 - 익명으로도 신고가능
  * 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우 금지에 따라 신고내용은 보호되며, 원내지원신청 또는 작업중지 요청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내용은 접수 불가

ㅇ 한국재료연구원 'Safety 신고채널' 운영(Kakao business)

1) 카카오채널 '한국재료연구원 작업중지 신고센터' 친구추가

URL 주소	QR 코드
http://pf.kakao.com/_IRxlgs * 연구원 IP주소로는 접속이 불가합니다.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친구추가 바랍니다.	

2-1) (관리감독자, 현장소장 등) 작업중지 실적이 발생한 경우 요청 양식에 맞춰 상담원 채팅진행

2-2) (연구활동종사자, 협력업체 작업자 등)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양식에 맞춰 상담원 채팅진행

URL 주소	QR 코드
http://pf.kakao.com/_IRxlgs/chat * 연구원 IP주소로는 접속이 불가합니다.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채팅(신고) 바랍니다.	

* 채널관리자(4명)에게 즉각 메시지가 전송됨
* 상담원 채팅 운영시간 : 월,화,수,목,금,토 09:00~24:00

3) 신고내용은 최우선적으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되며, 후속조치가 완료된 후 작업 및 실험의 재개 가능

□ 향후계획

ㅇ 신고채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지속 전개

ㅇ 홍보예산 : 1,600,000원

- 지출내역 : 작업중지 요청제 카드뉴스, 포스터 디자인 및 카카오 채널 메시지 발송 등을 위한 월렛 금액 충전 등

* 재원 : 연구실안전관리비(E157090)

□ 작업중지 요청제 홍보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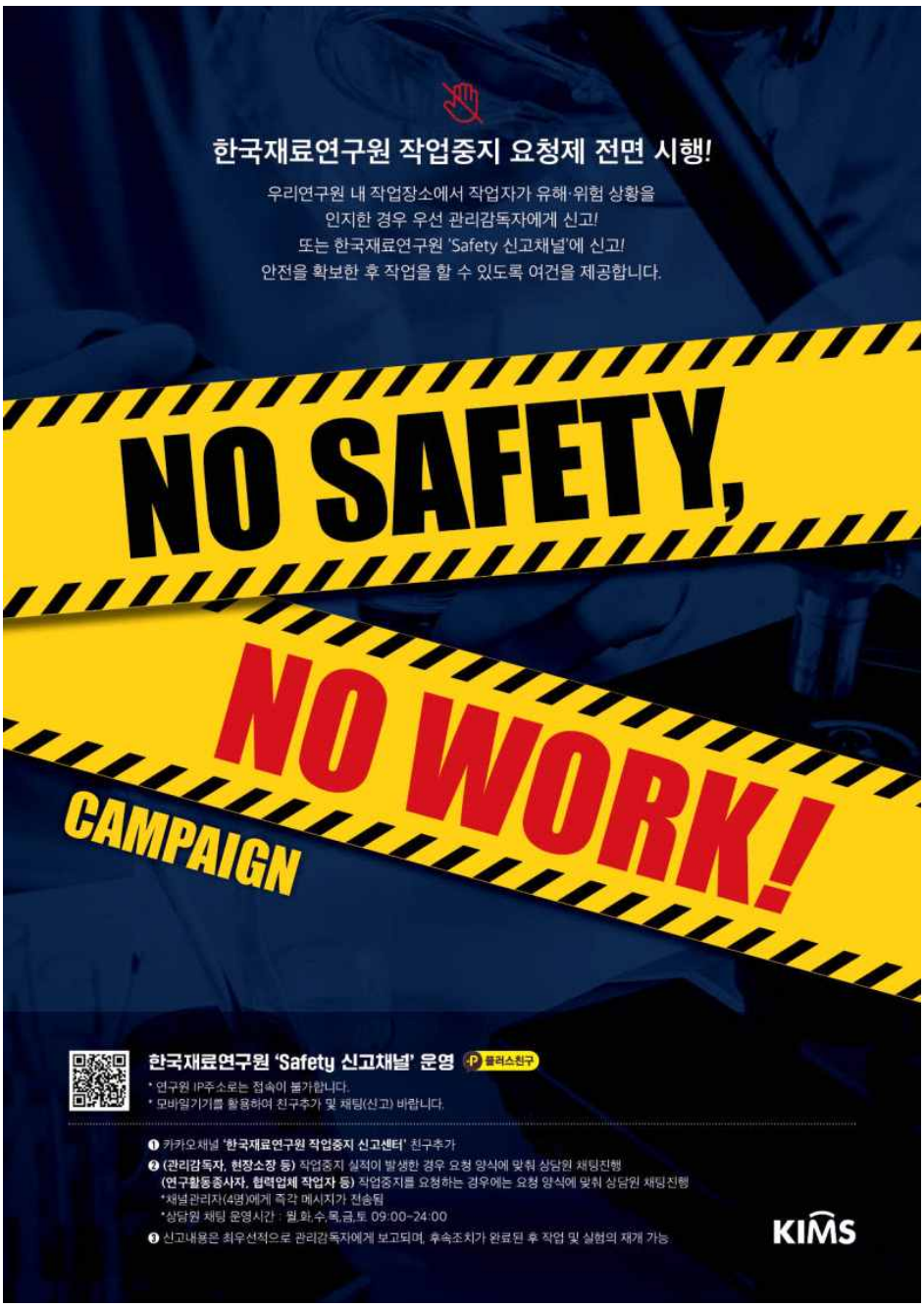

별첨 작업중지 요청제 카카오채널 운영화면 (신고 및 통보)

□ 채널명 : 한국재료연구원 Safety 신고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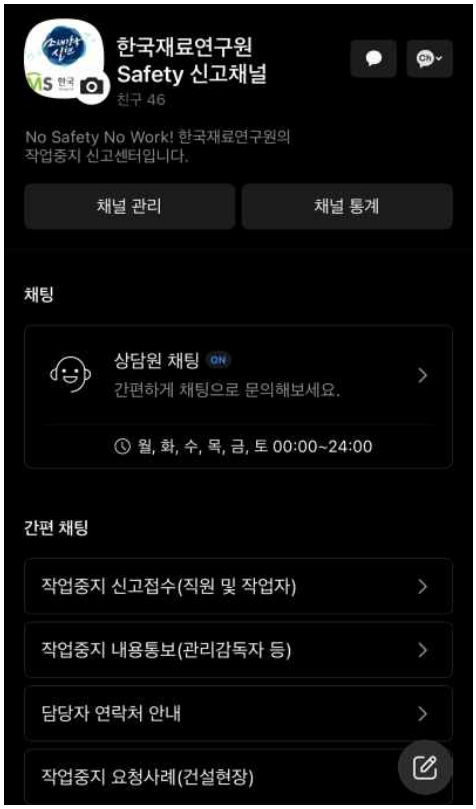

<재료(연) Safety 신고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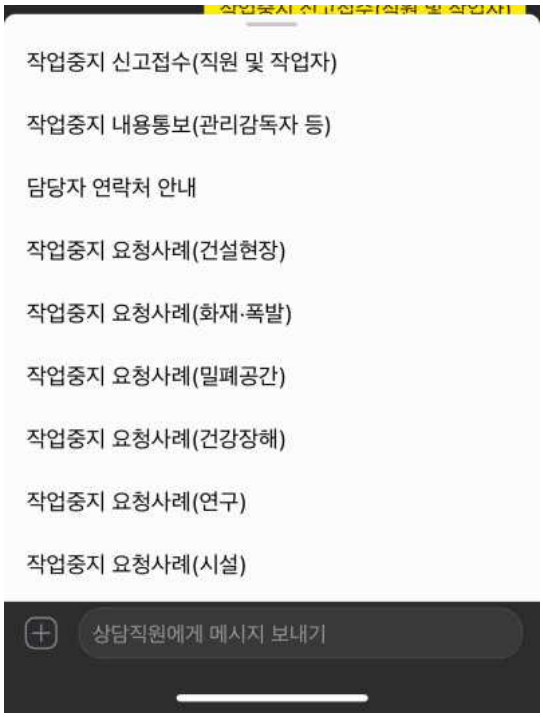

<상담원 채팅화면 및 자동안내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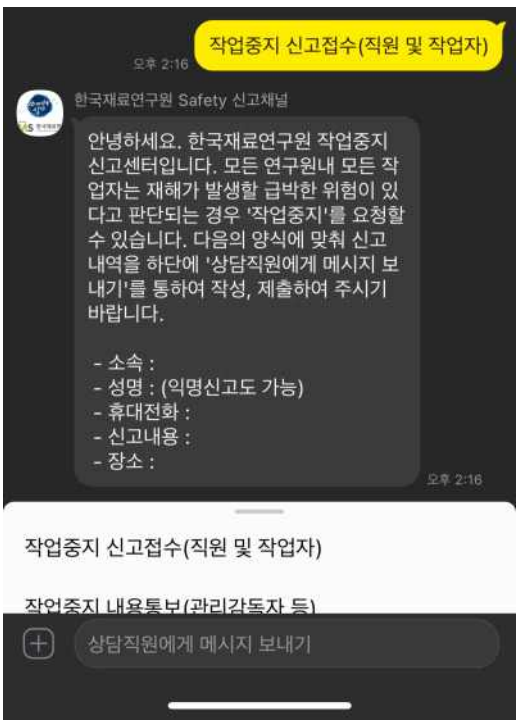

직원 및 작업자 메시지 발송(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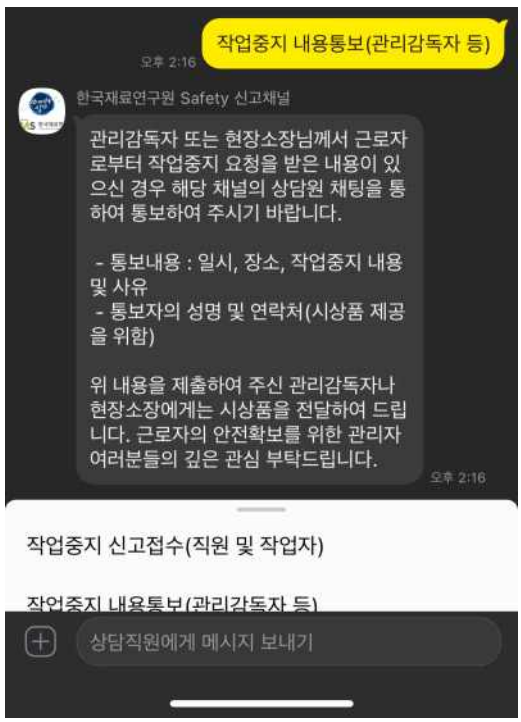

<관리감독자 및 현장소장 메시지 발송(통보)>